

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

이 회의 명칭은 천주교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(약칭 '서울평협')라 하고 영문 명칭은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Seoul (약칭 CLAS)로 한다.

제 2 조 (사무소 소재지)

이 회의 사무소는 천주교 서울대학교구 관할 지역 안에 둔다.

제 3 조(목적)

이 회의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교회와 사회 안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게 부과된 복음화의 소명을 다하며, 서울대학교구장(이하 교구장이라 한다)의 사목지침에 충실한 교구 단체들 간의 친교와 일치 노력으로 교구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들 상호간 및 국내외 교구 평신도 단체·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복음화와 사도직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담당사제)

이 회의 담당사제는 교구장에 의해 임면되고, 교회 가르침에 따라 단체 제반업무를 지도한다.

제 5 조 (회원)

이 회의 회원은 다음 제 1 항과 같이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분되며, 회원은 제 2 항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얻는다.

① 회원의 구분

1. 단체 회원: 서울대학교구가 인준한 평신도 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
2. 개인 회원: 국내외의 평신도 사도직 단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회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
3. 단체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의 직 상실로 인해 제 1 호 회원 자격이 변경된 때는 제 2 호의 요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.

②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서류를 이 회의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단체 회원은 단체등록신청서 (소정양식) 1 통
2. 개인 회원은 개인회원기록카드 (소정양식) 1 통

제 6 조 (사업)

이 회의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회원 단체들의 복음화 활동에 대한 지원
- ② 평신도 신앙과 사도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, 제안 및 홍보
- ③ 교구장의 사목지침과 교구장이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과 지원
- ④ 교구 평신도를 위한 각종 교육·양성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- ⑤ 국내외 각종 단체와 가톨릭 평신도 기구·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교류
- ⑥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임 원

제 7 조 (임원의 구성)

이 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- ① 회장 1 인
- ② 부회장 5 인(수석부회장 1 인, 단체장회의 선출직 2 인, 개인회원 2 인)
- ③ 감사 2 인

- ④ 사무총장 1 인
- ⑤ 각 위원회의 정·부위원장
- ⑥ 사회사도직연구소장과 부소장

제 8 조 (선임과 임기)

각 항 임원의 선임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

1. 제 10 조의 고문단과 제 16 조 회장단 회의 합의로 추천하고 교구장이 동의한 3 인 이내의 후보자 가운데서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, 추천된 후보가 1 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투표 없이 동의절차만 거칠 수 있다.

2.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일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만료 후에 후임자가 결정되지 아니 한 때에는 후임자의 결정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3. 회장이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잔여임기가 1 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 9 조 제 2 항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 년 이상인 때는 제 1 호에 규정한 방식으로 다음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보선한다. 보선된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4. 선출된 회장은 교구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② 부회장

1. 수석부회장은 신임 회장이 총회에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한다.

2. 제 22 조에 의해 선출된 양대 단체장회의 부의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. 따라서 양대 단체장회의 부의장의 직을 승계하거나 상실하면 당연히 부회장의 직도 승계되거나 상실된다.

3. 부회장 중 2 인은 개인 회원 가운데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그 선임을 신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4. 모든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
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 중 감사가 모두 결원하면 임시총회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1 인 결원 시에는 다음 총회까지 그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 한다.

④ 사무총장은 회장이 담당사제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날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개시 이후 최초의 총회에서 지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각 위원회의 정·부위원장은 회장이 제 16 조의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. 각 위원회의 정·부위원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.

⑥ 사회사도직연구소장은 회장이 담당사제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 날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 개시 이후 최초의 총회에서 지명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사회사도직연구소 부소장은 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9 조 (임무)

각 항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① 회장은 이 회의 대표로서 회무를 총괄하고 비선출직 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이 회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회장 직무대행의 순서는 제 7 조 제 2 항의 괄호 안에 명시된 순서에 따르며 순서 해당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우선한다.

③ 감사는 매년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④ 사무총장은 이 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며, 이 회의 모든 회의에서 의장의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⑤ 각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제반 활동을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사회사도직연구소장은 동 연구소의 연구위원 초빙과 사업을 총괄하며,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유고시에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10 조 (고문단)

이 회의 고문단은 역대 회장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 구성하며 직전 회장을 상임고문으로 한다.

제 11 조 (자문위원)

회장은 이 회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 12 조 (구성)

이 회의는 제 6 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.

제 13 조 (일반위원회)

일반위원회로 설치되는 각 위원회의 명칭, 기능, 업무는 따로 정한다.

제 14 조 (특별위원회)

특별위원회는 특수 목적 또는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위해 설치되며 그 종류와 구성은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 4 장 임원회의

제 15 조 (구분)

임원회의는 회장단회의와 정·부위원장회의로 구분한다.

제 16 조 (회장단회의)

회장단회의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사도직연구소장과 의안에 관련된 위원장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정·부위원장회의)

위원회 정·부위원장회의는 회장, 수석부회장, 사무총장, 각 위원회의 정·부위원장과 사회사도직연구소장과 부소장으로 구성한다.

제 18 조 (회합)

회장단회의와 정·부위원장회의는 각기 매월 1 회 정례 회합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합을 갖거나 두 회의 연석회합을 가질 수 있다.

제 5 장 단체장회의

제 19 조 (구분)

단체장회의는 신심·운동단체와 직능·동호인단체(이하 양대 단체라 한다)로 구분하여 각기 따로 회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단체장 전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 20 조 (소집)

양대 단체장회의는 각기 매분기 1 회 열리는 정례회의와 필요시에 열리는 수시회의로 구분하며, 수시회의는 회장단 회의 결정 또는 해당 단체장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21 조 (의장)

모든 단체장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시에 양대 단체장회의 의장 직무를 제 22 조에 따라 선출된 양대 단체 부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단체장 전체 회의 의장 직무를 회장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.

제 22 조 (부의장)

양대 단체장회의는 각 1 인씩의 부의장을 선출한다. 이때 선출되는 부의장은 개별 단체 회원

기준으로 한다. 따라서 부의장을 맡은 단체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임기 동안 같은 단체의 장이 부의장 직을 승계한다.

제 6 장 총 회

제 23 조 (구분)

이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제 24 조 (소집)

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임원회의, 단체장회의 중 하나 이상 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 25 조 (재적수)

총회의 재적수는 이 회의 임원, 임원이 아닌 단체의 장(또는 그 대리인), 각 위원회 위원, 연구소 연구위원 및 기타 개인 회원으로 이루어진다.

제 26 조 (정족수)

총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(위임자 포함)으로 성립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 27 조 (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① 회장, 수석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
- ② 사무총장과 사회사도직연구소장의 지명 동의
- ③ 회칙의 개정
- ④ 사업계획·결과와 예산·결산의 승인
- ⑤ 회비 등 회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
- ⑥ 기타 중요한 사항

제 7 장 연 구 소

제 28 조 (명칭)

이 회의는 제 3 조 목적의 원활한 달성과 제 6 조 제 2 항에 근거한 이론 및 실천방안의 연구와 그에 관련된 사업의 전담기구로서 사회사도직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한다)를 둔다.

제 29 조 (운영)

연구소의 조직,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.

제 8 장 사 무 국

제 30 조 (사무국의 설치)

이 회의 행정, 재무, 홍보 등 제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의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을 둔다.

제 31 조 (사무직원)

사무국에는 유급의 직원을 두며,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사무국 직원의 인사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 9 장 재 정

제 32 조 (회계 연도)

이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회계 연도 경과 후에도 신년도

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년도 예산 확정 때까지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.

제 33 조 (재원)

이 회의 재원은 평신도 주일 헌금, 회비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회칙은 교구장이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준용)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의 법규와 관례에 따른다.
- ③ (경과규정) 이 회칙 개정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종전 회칙에 의한 임원구성이 이 회칙과 다른 경우에는 이 회칙에 따라 조정하되, 다음 총회까지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1968. 11. 30. 제 1 차 창립총회에서 제정.
- 1979. 4. 7. 제 9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1979. 4. 27. 경갑룡 주교 인준.
- 1981. 2. 1. 임시총회에서 개정.
- 1981. 2. 9. 교구장 인준.
- 1982. 2. 26. 제 12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1986. 4. 20. 임시총회에서 개정.
- 1986. 5. 23. 교구장 인준.
- 1994. 1. 22 제 24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1995. 1. 21. 제 25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1995. 2. 4. 교구장 인준.
- 1996. 4. 13. 임시총회 개정.
- 1996. 4. 16. 교구장 인준.
- 1998. 9. 5. 임시총회에서 개정.
- 1998. 9. 9. 교구장 인준.
- 2004. 5. 29. 임시총회에서 개정.
- 2004. 6. 23. 교구장 인준.
- 2007. 1. 20. 제 37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2007. 2. 13. 교구장 인준.
- 2008. 1. 19. 제 38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
- 2009. 2. 11. 교구장 인준.
- 2013. 1. 26. 제 43 차 정기총회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.
- 2013. 2. 28. 교구장 인준.
- 2014. 1. 18. 제 44 차 정기총회에서 개정.